2025년 시설급여 평가지표 다빈도 Q&A 사례집 (4차)_수정 추가사항 안내

【추 가】

시설급여 평가지표 일반사항

Q6 **표본 선정 시 평가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와 근무 중인 직원만 선정하나요? 아니면 퇴소한 수급자와 퇴사한 직원도 표본으로 선정하나요?**

○ 평가대상은 전수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표별로 표본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표본으로 선정된 수급자와 직원의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기준에 따라 표본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지표적용기간 동안 퇴소한 수급자와 퇴사한 종사자는 모두 표본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퇴소일자 또는 퇴사일자가 속한 주기(분기, 반기, 연 1회 등)의 기록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 일반사항

Q7 **직원의 휴직 또는 병가로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직원이 휴직 또는 병가로 인하여 연속해서 1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 이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시작일이 포함된 주기는 확인하지 않으나 복귀하여 근무를 시작하는 일자가 포함된 주기의 교육 또는 훈련 수행여부는 확인합니다.

(예시) 휴직기간이 2026. 3. 1. ~ 2027. 2. 29.인 경우,

▷ '26년 1분기~4분기 → 상 · 하반기 교육 및 훈련 미실시 예외인정

▷ '27년 1분기 → 상반기 교육 및 훈련 실시하여야 인정

시설급여 평가지표23(22) 수급자 건강관리

Q72 흉부 X-ray 영상검사 판독지에 '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핵'이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인정되나요?

○ 검사 일자가 확인되는 흉부 X-ray 영상검사 판독지에 '정상' 또는 '특이소견 없음'의 결과가 확인된다면, 결핵 검사가 시행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6(25) 구강관리

Q90 구강건강을 위한 교육은 치과의사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거나 동영상 교육이 가능한데 치과위생사도 구강관리 교육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 구강관리 교육 내용에는 노인 구강관리방법, 틀니 세척방법, 치매환자 양치방법, 양치도구 관리법 등이 있고 교육 방법은 자유롭게 운영 가능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4(23) 통합적 사정

Q76 인지기능 평가도구 CIST, MMSE 외 다른 평가도구를 사용하여도 되나요?

○ 인지기능상태 평가를 위한 평가도구는 기관의 운영상황에 맞춰 타당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평가도구에 포함된 모든 기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단, 평가도구에 포함된 문항 중 그림이 있는 경우 수급자가 직접 작성한 내용(도형 그리기 등)은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두로 안내하고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림이 별도로 첨부되지 않더라도 평가에 대한 내용만 확인된다면 인정합니다.

※ 【참고사항】

CIST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하고 타당성 검증을 완료한 인지선별검사 도구입니다. 도구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중앙치매센터(www.nid.or.kr, ☎ 1899-9988)에서 교육 이수한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관평가에서는 CIST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